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륜 자동차	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차명		
	형식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수수료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3. 튜닝 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각 호의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